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인도네시아 식약청(BPOM) 미생물(유산균) 허용 목록 개정

-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는 일반가공식품의 유산균(미생물) 허용 목록과 총 유산균의 사용 범위와 증빙 기준에 대하여 개정안을 발표
- 기존 허용 유산균 사용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본 법령이 시행되기 전 유통 허가를 받은 가공식품은 본 법령이 발표된 후 30개월 이내에 규정을 준수해야 함
- 일반 가공식품 사용 허용 미생물(유산균) 목록

No.	미생물(유산균) 종류	식품 유형	요구사항(규정)
1	Bacillus coagulans	인니 식품의약청 (BPOM) 식품 분류 13.0(특수 영양식품 -PKGK)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	1. 16종의 미생물은 식품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재료와 배합(혼합)으로 사용될 수 있음 2. 유효기간별 총 미생물 수 > 1x10 ⁶ CFU/g 3. 2항의 총 미생물 수는 분석결과/시험결과로 입증되어야 함 4. 본 미생물이 함유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ALT 미생물 검사는 제외됨
2	Bifidobacterium animalis		
3	Bifidobacterium breve		
4	Bifidobacterium lactis		
5	Bifidobacterium longum		
6	Lactobacillus acidophilus		
7	Lactobacillus casei		
8	Lactobacillus fermentum		
9	Lactobacillus lactis		
10	Lactobacillus paracasei		
11	Lactobacillus plantarum		
12	Lactobacillus reuteri		
13	Lactobacillus rhamnosus		
14	Leuconostoc citreum		
15	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. bulgaricus		
16	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. thermophilus		

- 기존 2022년 기준 허용 목록에서 Lactobacillus helveticus, Lactobacillus kefir, Streptococcus cremoris, Streptococcus lactis, Lactobacillus lactis subsp.lactis, Lactococcus lactis 6종 제외(삭제)
- 본 규정은 유산균의 유효기간 설정 도래 기간의 유산균이 1×10^6 CFU/g 최소 검출 결과가 있어야 함

* 출처 : BPOM 규정 2023년 38호(2023년 2월 7일)

2. 주류, 돼지고기, 비속어 HALAL 인증 제품 이름에 못쓴다



- 브랜드나 제품 이름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
- 브랜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평가 수준을 결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음
- 인도네시아 Ulama위원회(MUI)는 할랄인증검사기관(LPPOM MUI) 규정 (SK46/Dir/LPPOM MUI/XII/14)을 통해 제품 이름 및 제품 양식 작성에 대한 정책을 공지. 할랄 인증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

- 루트 비어, 럼 건포도 맛 아이스크림, 알코올 0% 맥주 와 같이 이름에 주류가 포함된 상품
- 구운 돼지고기, 튀긴 돼지고기, 베이컨, 햄버거, 핫도그 등 돼지와 개에서 유래한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
- 포르노, 선정적 저속어 또는 외설적인 의미가 포함된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
- 악마(Devil), 귀신 등 사탄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제품
- 발렌타인 초콜릿, 크리스마스 비스킷, 공시파차이 국수 등 불신과 악을 조장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제품

*출처 : Indonesiabaik.id(2023.9.27.)

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- 인도네시아 식약청(BPOM) 시럽(sirup) 제품의 에틸렌글리콜(EG) 및 디에틸렌 글리콜(DEG)의 안전 평가 승인 등록에 따른 수입유통신고 유의 사항
 -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(supplement), 전통의약품 (traditional Medicine) 등록 허가받은 시럽(Sirup-액상) 제품에 대하여 EG, DEG의 안정성 검증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사전 등록 의무화
 -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안정성 승인 등록이 아직 되지 않은 제품도 수입 유통신고확인서(SKI)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세관 통관 절차는 진행 가능하나, 안정성 승인을 받을 때까지 유통 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수입유통신고확인서 (SKI)를 발급하여 주고 있음

-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<https://www.pom.go.id/sirop-aman> 사이트에서 EG/DEG 공인 검사 결과 및 검출 유무에 따른 심의를 하고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공지하여 자국 소비자에게도 홍보 안내하고 있음
- 안전평가 승인 등록 제품은 8월 27일자로 업데이트 되어 있으며, 추가 승인 제품에 대하여 후속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음
- 시험 검사 결과 및 근거 자료 준비에 따라 식약청의 검증 심의에 평균 6개월 소요되고 있어 향후 한국 수출입업체 관계자의 유의가 필요
- 일반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등록(ML) 허가받은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ED/DEG의 추가 안정성 평가와 사전 심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, 수입 유통신고 시에 솔비톨(Sorbitol) / 글리세롤(Glycerol) / 프로필렌글리콜 (Propylene Glycol) 첨가물 사용 제품에 대하여 ED/DEG 잔류 검사 항목을 추가 요구하고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함

*출처: 식약청(BPOM) 시행공고(PW.04.08.1.5.11.22.10 Tahun 2022)

III | **통관문제사례 관련**

(해당없음)

IV | **FTA 이행이슈 관련**

(해당없음)